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년월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2년 1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2년 1월 18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3. 규칙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